

# 예산총칙

2016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62,540,913	16,876,227
일반회계	472,715,927	14,181,478
특별회계	89,824,986	2,694,750
공기업특별회계	62,508,070	1,875,242
상수도사업	12,671,788	380,154
하수도사업	49,836,282	1,495,088
기타특별회계	27,316,916	819,507
의료급여기금	1,829,821	54,895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111,422	3,343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80,939	2,428
농공지구조성	4,582,686	137,481
중소기업육성자금	5,580,000	167,4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199,813	35,994
밀양댐주변지역지원	256,279	7,68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251,000	7,530
수질개선관리	4,967,542	149,026
보건진료	1,961,041	58,831
농업발전기금	6,496,373	194,891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788,900천 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5,6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